

변경 대비표

1. 펀드명 : 하나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 1) 모투자신탁 추가
- 2)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 3) 수익증권 판매가격 적용일 변경
- 4)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6.12.01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table border="1">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 <td>90% 수준</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0% 수준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0% 수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u>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u></td> <td><u>100% 이하</u></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u>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u>	<u>100% 이하</u>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u>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u>	<u>100% 이하</u>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모투자신탁명</th> <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u>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u></td> <td><u>주요투자대상</u></td> <td><u>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 미만</u></td> </tr> <tr> <td><u>투자목적</u></td> <td><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중국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u></td> </tr> <tr> <td><u>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u></td> <td><u>-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에 투자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자산은 통화 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u></td> </tr> </tbody> </table>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u>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u>	<u>주요투자대상</u>	<u>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 미만</u>	<u>투자목적</u>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중국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u>	<u>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u>	<u>-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에 투자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자산은 통화 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u>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u>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u>	<u>주요투자대상</u>	<u>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 미만</u>											
	<u>투자목적</u>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중국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u>											
	<u>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u>	<u>-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에 투자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자산은 통화 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u>											

<p>7.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u>및 중국 관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u>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p>														
<p>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p> <table border="1" data-bbox="384 880 906 1272"> <thead> <tr> <th>투자 대상</th> <th>투자 비율</th> <th>투자대상 내역</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 <td>9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함)</td> <td>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td> </tr> </tbody> </table>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함)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p> <table border="1" data-bbox="906 880 1444 1514"> <thead> <tr> <th>투자 대상</th> <th>투자 비율</th> <th>투자대상 내역</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 <td rowspan="2"><u>100% 이하</u></td> <td>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td> </tr> <tr> <td><u>하나 UBS 차이나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td> <td><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u></td> </tr> </tbody> </table>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u>100% 이하</u>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	<u>하나 UBS 차이나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u>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함)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u>100% 이하</u>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														
<u>하나 UBS 차이나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u>														
	<p>(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p>	<p>(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u>법제 82 조제 1 호</u>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p>														
	<p>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p>	<p>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u>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u>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p>														

	<p>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p> <p>-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p>	<p>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p> <p>-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p>								
<p>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신설)</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별첨 1)</p>								
	<p>(2) 투자제한 (신설)</p>	<p>(2) 투자제한 -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별첨 2)</p>								
<p>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p>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p> <table border="1" data-bbox="395 1312 896 1464"> <thead> <tr> <th>투자 대상</th> <th>투자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 <td>90% 수준</td> </tr> </tbody> </table> <p>(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p>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0% 수준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p> <table border="1" data-bbox="919 1312 1423 1576"> <thead> <tr> <th>투자 대상</th> <th>투자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 <td>100% 이하</td> </tr> </tbody> </table> <p>(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p>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0% 이하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0% 수준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0% 이하									

<p>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p> <p>(3) 비교지수(Benchmark) 주1) 본 자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CSI300지수 * 90%) + (Call 금리 X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p> <p>다. 수익구조 본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p> <p>[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신설></p>	<p>(3) 비교지수(Benchmark) ※ 본 자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또는 중국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CSI300지수 * 90%) + (Call 금리 X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p> <p>다. 수익구조 본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중국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p> <p>[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별첨 3)</p>
--	---

<p>제2부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3영업일</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4영업일</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u>라.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u> <u>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분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u></p>
<p>제 2 부 집합투자구에 관한 사항</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p>

	<p>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p> <p>나. 과세 (신설)</p>	<p><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u> <u>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u> <p><u>※ 2016년 12월 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u></p> <p>나. 과세</p> <p><u>(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u></p> <p><u>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u></p>
--	--	--

		<u>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u>
제 4 부 집합투자기 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 타 투자자 보호를 위 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 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 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u>투자대 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 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 당한다)</u>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 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 일)

<p>제 5 부 기 타 투자자 보호를 위 해 필요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 려가 없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 는 경우는 제외</p> <p>나. 임의해지 (신설)</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u>현행과 동일</u>)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법시행 령 제 224 조의 2 에서</u> 정하는 경우는 제 외</p> <p>나. 임의해지 - <u>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 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 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 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 합니다.</u></p>
<p>제 5 부 기 타 투자자 보호를 위 해 필요한 사항</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p> <p>-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u>현행과 동일</u>) <u>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p> <p>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p> <p>- <u>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u></p>

	<p>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p>	<p>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p>
	<p><신설></p>	<p>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p>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p>I 집합투자 기구의 개요</p>	<p>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p>	<p>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을 주로 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p>		
<p>I 집합투자 기구의 개요</p>	<p>매입방법 · 17시 이전 : 제2영업일 · 17시 경과 후 : 제3영업일</p>	<p>매입방법 · 17시 이전 : 제3영업일 · 17시 경과 후 : 제4영업일</p>		
<p>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p>	<p>[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p> <p>[모집합기구의 투자목적] (신설)</p>	<p>[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중국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p> <p>[모집합기구의 투자목적]</p> <table border="1" data-bbox="906 1948 1447 1998"> <tr> <td data-bbox="906 1948 1029 1998">모투자</td> <td data-bbox="1029 1948 1447 1998">투자목적</td> </tr> </table>	모투자	투자목적
모투자	투자목적			

	<p>(2) 투자대상 하나UBS슈퍼차이나A Share ETF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0%수준</p> <p>(3) 비교지수(Benchmark) ※ 본 자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CSI300지수 * 90%) + (Call 금리 X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p> <p>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p>	<table border="1" data-bbox="911 264 1433 638"> <tr> <th colspan="3" data-bbox="911 264 1433 315">신탁명</th> </tr> <tr> <td data-bbox="911 315 1027 398">하나 UB S 차이</td> <td data-bbox="1027 315 1144 398">주요투자대상</td> <td data-bbox="1144 315 1433 398">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 미만</td> </tr> <tr> <td data-bbox="911 398 1027 638">나대표 증권모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 <td data-bbox="1027 398 1144 638">투자목적</td> <td data-bbox="1144 398 1433 638">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중국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td> </tr> </table> <p>(2) 투자대상 하나UBS슈퍼차이나A Share ETF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u>및</u> 하나UBS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0% 이하</p> <p>(3) 비교지수(Benchmark) ※ 본 자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u>또는 중국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u>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CSI300지수 * 90%) + (Call 금리 X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p> <p>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p>	신탁명			하나 UB S 차이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 미만	나대표 증권모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목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중국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신탁명											
하나 UB S 차이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 미만									
나대표 증권모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목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중국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p>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p> <p>[모집합기구의 투자전략] (신설)</p> <p>3. 운용전문인력</p>	<p>자증권 및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u>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u>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p> <p>[모집합기구의 투자전략]</p> <table border="1" data-bbox="911 539 1433 1061"> <thead> <tr> <th data-bbox="911 539 1027 618">모투자 신탁명</th> <th colspan="2" data-bbox="1027 539 1433 618">주요투자전략</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11 618 1027 1061"> 하나UBS 차이 나대표 증권모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td> <td data-bbox="1027 618 1144 1061"> 주요투자대상 </td> <td data-bbox="1144 618 1433 1061">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주요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td> </tr> </tbody> </table> <p>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p>	모투자 신탁명	주요투자전략		하나UBS 차이 나대표 증권모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주요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 신탁명	주요투자전략							
하나UBS 차이 나대표 증권모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주요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p>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하나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p>	<p>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하나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p> <p>2.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p>
제 16 조(투자목적)	<p>이 투자신탁은 <u>중국 본토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u>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p>	<p>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u>및 중국 관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u>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p>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8 조 (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	<p>1. “하나UBS 슈퍼차이나 A Share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수준으로 한다.(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의 투자비율은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다.</p>	<p>1.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p> <p>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p>
제 25 조 (판매가격)	<p>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으로 한다.</p>
제 33 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p>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일)</p> <p>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p>
<p>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p>	<p><신설></p>	<p>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분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p>
<p>제 45 조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p>	<p>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⑤(신설)</p>	<p>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p>
<p>제 49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p>	<p>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u>간이투자설명서</u>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u>및 간이투자설명서</u>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⑦<u>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u></p> <p>⑧ <u>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u></p> <p>(순차적 연번 변경)</p>
--------------------------------	---	--

<별첨 1> 투자대상: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중국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②채권	40% 미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③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어음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⑤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⑦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⑨증권의 차입	집합투자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 차입은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다.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별첨 2> 투자제한: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p>	
<p>파생상품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p>최초설정일로 부터 1월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p>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p>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집합투자 증권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p style="text-align: center;">한도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집합투자 업자 및 집합투자 증권 적 용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당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 나목을 제외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별첨 3> 투자설명서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주요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집합투자업자	UB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설정일	1996년 11월 15일
주요투자대상	순자산의 최소한 70%를 중국에 소재하거나 또는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지분증권
주요투자전략	이 상품은 중국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주, 레드칩 종목 선정을 통해 중국 경제 전 사이클에 걸쳐 투자기회를 포착합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대형주에 집중하기 보다는 업종 내 성장성이 큰 우량종목 비중을 집중 투자합니다.
펀드 순자산	약 2,228억원(2013년 12월 23일 기준)
책임운용역	Bin Shi [운용중인 자산규모: 14억 CHF]
비교지수	MSCI China *100%
국내 등록일	2010년 2월 22일
<p>*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u>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등록 후 공시(수시공시 등)될 예정입니다.</u></p> <p>*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펀드는 스윙싱글프라이싱(Swing Single Pricing)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스윙싱글프라이싱(SSP) 제도란 해당 펀드에 추가 자금 유입과 자금의 유출이 있을 경우 이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해당 자금 유입 및 유출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가 산출 방식입니다. <u>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매입 또는 환매할 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보수 및 비용 예시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때 부과되는 거래 비용은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2% 이내에서 정해집니다.</u></p>	

• 비교지수(Benchmark) : MSCI China *95% + call 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중국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MSCI China *95% + call 5%** 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 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헷지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중국 주식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UBS (Lux) Equity Fund - China Opportunity (USD) 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